

경기단체, 시·군체육회 운영지원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지원규정

경기단체,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지원규정

제정 2016. 4. 1

경상북도 승인 2016. 4.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와 경기인구확대 및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단체 및 각급팀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과 체육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본회 회원종목단체, 시·군 체육회, 체전참가 도대표팀, 각 실업팀 및 대학팀 등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각 지원대상의 지원비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별표1]에 책정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지원항목) 전국체전 대비 기본(동·하계)훈련비, 특별훈련비,(해외)전지훈련비, 팀창단 지원비, 종목별 특수장비비, 강화훈련비, 전국체전 예선대회비, 정책지원비, 종목단체행정보조비, 시·군체육회(사무국장 활동 지원 포함) 행정정보조비, 전무이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각종 훈련비는 해당종목단체의 요구에 의해 사무처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하며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체전대비 기본(동·하계)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30일) • 하계(60일) 	7,000 (1인 1일)	일식대 보 존
전국체전 예선대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300,000 ~ 10,000,000	대 회 운영비 지 원
종목단체 행정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단체 조직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관리인원 : 정가맹, 준가맹 구분) 	월200,000 ~ 1,000,000	
시·군체육회 행정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체육회 조직강화 및 단체육성 지원 	월500,000	운영비 300,000 도시책 추진 사무국장 활동비 200,000
전무이사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단체 행정사무 업무자 활동 경비 지원 	월300,000	
팀 창 단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인구저변 확대와 꿈나무 양성을 위한 신생팀 창단 	초중 2,000,000 고등 3,000,000 대일 10,000,000	창단정책 지원비